



EPR 의무이행을 산정에 관한 몇 가지 생각

민달기 | 가천의과학대학교 보건환경시스템학과 교수
환경부 민간 명예 감사관(2003~2006)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폐기물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생산자재활용책임(EPR) 제도가 도입된 지 어언 3년이 지났습니다. EPR 제도는 OECD에서 개발된 폐기물에 관한 경제적인 유인책으로서 기존의 생산자에치금제도를 보완한 것이며, 이 제도는 비슷한 시기에 독일, 일본 등지에서 적용되어 왔습니다. 3년간 실시된 EPR 제도는 시행 초기에 몇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의무이행(량)에 관한 몇 가지 생각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03년과 '04년의 의무이행량과 '05년의 의무이행율을 동일한 기준으로 환산하여 보면, 각 공제조합들은 몇 개의 군으로 분류되어집니다.

- (1) 증가형 - EPS, Plastic 등은 3년간 의무이행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 (2)凹자형 - 유리병, 금속캔, 타이어 등은 '04년도 이행율이 감소하였다가' '05년도에 증가
- (3)凸자형 - 종이팩, PET, 윤활유는 '04년도 이행율이 증가하였다가' '05년도에 감소
- (4)감소형 - 세탁기는 3년간 의무이행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유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있어서 의무이행율이 감소되어지는 경우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처럼 의무이행율이 변할 수 있는 가장 큰 2가지 사유는 각 공제조합들이 EPR이 시행되기 이전의 재활용 통계를 부실하게 관리해왔거나, 또한 EPR 시행 이후 의무이행(량)율을 환경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다각적인 이기주의가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PR의 근본적인 취지나 재활용율의 제고 측면에서 이러한 朝三暮四는 전체적인 관리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년 증가일로의 이행율을 약정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매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던 의무이행율은 즉, 향후 일정기간(3년 또는 5년정도) 동안의 의무이행율로 장기 고시되어야만 하며, 공제조합도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계획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최고의 재활용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치더라도, 재활용 품목별로 재활용율의 상하한치를 각각 두어야 합니다. '05년을 기준으로 EPR 품목별 의무이행율은 최저 3.6%에서 71.8%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품목별로 수거 및 재활용 기술 등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활용율의 상한치가 결정되고, 장기 의무이행율이 고시된다면, 국가정책이 아닌 상업적인 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던 2년간의 초과물량 저축에 대한 규정도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특히 의무이행(량)율을 초과하여 이행한 저축물량의 경우 현행의 2년보다는 1년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초과 이행량을 전부 저축물량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50% 한도내에서 단계적으로 인정해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